알아두면 유익한 코너(15)

River & Culture



허 철 | 우리협회 이사 / (주)도화엔지니어링 기술고문 (hc5321@naver com)

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기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

(「하천법」 제33조 등 관련)

다음은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(대통령령) 제26조·제27조 및 「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」(총리령)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"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기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"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4-0071 및 2014-0073, 회신일 2014, 04, 11)의 내용이다.

■ 질의요지

「농어촌정비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자, 「하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, 별도로 「하천법」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?

■ 회답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자, 「하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, 별도로 「하천법」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.

■ 이유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르면, "농업생산기반시설"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가 포함되고, 같은 조 제5호 마목에 따르면 "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"에는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,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(하천의 최고 수위) 이하의 수면과 토지로서의 저수지 등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등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이 포함되는바,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저수지는 하천 또는 하천구역에 위치할 수 있는데, 「하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르면 "하천"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기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,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합니다.

그리고,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



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• 군수 ·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,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는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 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 사용신 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

이 사안에서는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 산기반시설이자. 「하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 해당하 는 저수지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「농어촌 정비법」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, 별도로 「 하천법 ,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하기를 받아야 하 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.

살피건대, '농어촌정비법」은 농업생산기반, 농어촌 생활환 경, 농어촌 관광휴양지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정비·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 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(「농어촌정비법」 제1조), 같은

법 제2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반면, 「하천법」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 화적으로 정비·보전하며 하천의 유수(流水)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·관리·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(「하천법」 제1조) 「농어촌정비법」 과는 그 입법목적 및 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, 「하천법」 제33조 에 따른 하천점용허기의 대상 또한 하천구역 안의 토지 및 하천 시설 등으로 그 규율대상 또한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하며,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와 하천의 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 는 그 대상 및 목적이 상이하므로, 같은 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.

그리고.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하가 를받을필요가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승인 또 는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가 의제되어야 할 것인데, 인·허가의 의제란 주된 인·허가 가 있으면 관련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범위 안에서

의제대상 인·허가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할 권한을 잃게 되고, 주된 인·허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의제대상 인·허가를 관장하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결정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효과, 즉 개별 법률에 규정된 인·허가권자를 변경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서, 인·허가의 의제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이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(법제처 2008, 07, 02, 회신 08-0115 해석례 참조), 이 사인과 같이 명시적인 인·허가의 의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「하천법」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.

한편, 「농어촌정비법」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사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, 농 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,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, 같은 법 제106조제2항제32호에 따르면 제9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고 협의를 거친 사항은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, 이러한 의제규정에 따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

수 있으나, 만약 계획승인 및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저수지 자체에 대한 것이지, 저수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부유식 계류장에 대한 것이 아니며, 이 사안과 같은 부유식 계류장의 설치는 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으로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(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5호마목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,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. 따라서,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자, 「하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, 별도로 「하천법」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할 것입니다.

[법령정비 권고사항]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 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한다면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하여, 필요하다면 입법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. 끝.

